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사고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 ~ 1. 27.(8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시설물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